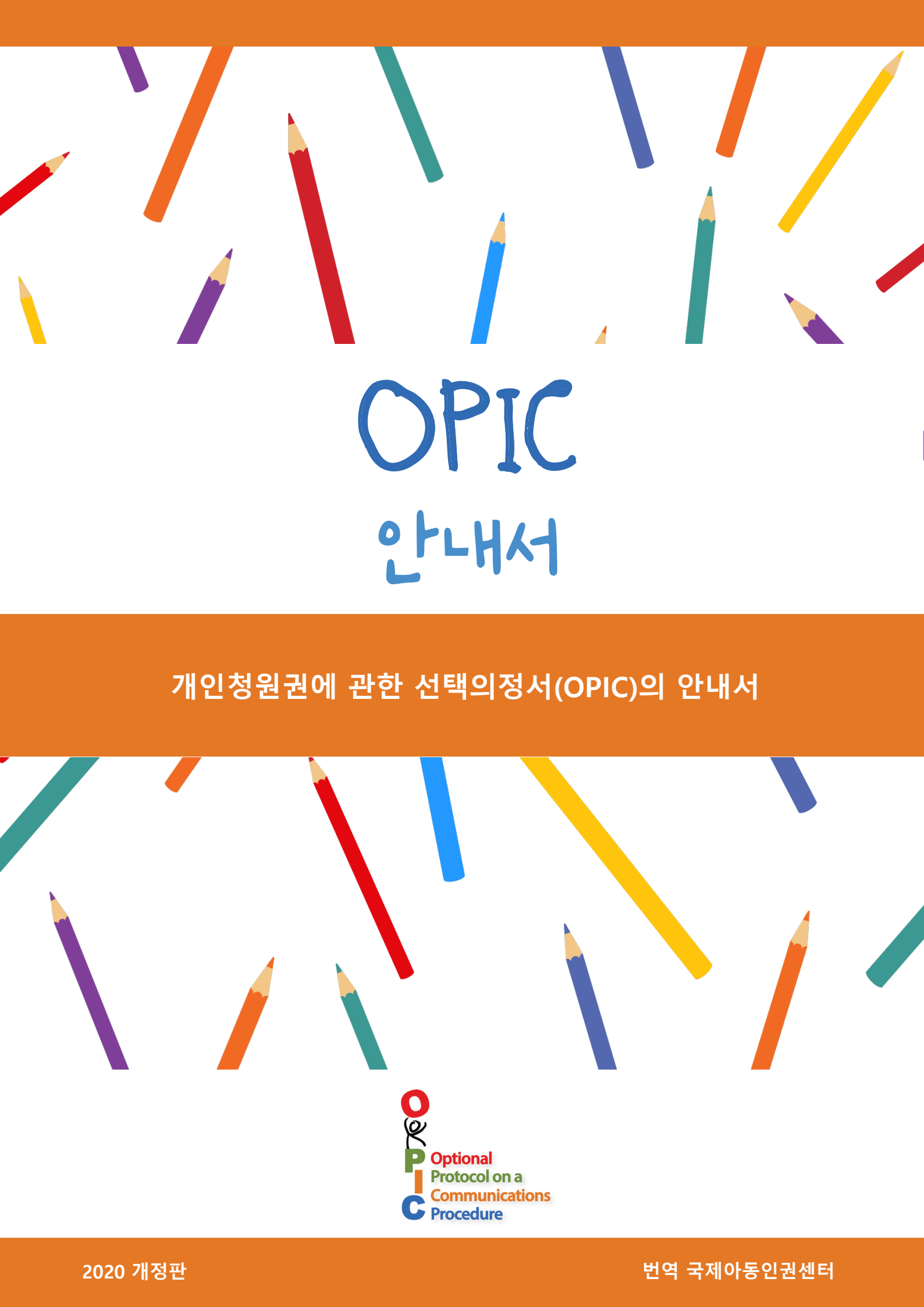




OPIC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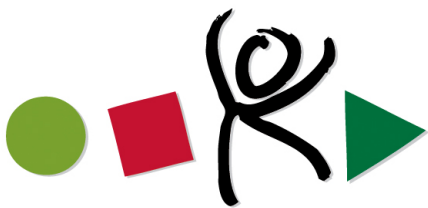
개인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OPIC)의 안내서



본 안내서는 2014년에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국제연대(Ratify OP3CRC, 현재는 해산됨)'를 위해 제작되었던 안내서를 2020년 8월에 Child Rights Connect가 보완한 것입니다.

본 번역본은 Child Rights Connect의 허가를 받아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번안(김희진 변호사 감수)한 것입니다.

소개



child rights connect

Child Rights Connect는 국가, 지역 및 국제 아동권리 단체 및 연대체로 구성된 독립적인 비영리 네트워크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Child Rights Connect의 회원이 있습니다.

Child Rights Connect는 아동권리를 위한 가장 큰 국제 네트워크 중 하나입니다. 모든 아동이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과 선택의정서(OPs)에 명시된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입니다. 본 네트워크는 1983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초안 작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간 유엔 인권 시스템이 아동의 일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홈페이지 방문하기: <https://www.childrightsconnect.org>



Child Rights Connect는 **개인청원권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IC)**의 작성과 2014년 4월 발효를 이끈 비준 캠페인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조약을 통해 국제사회는 아동의 권리를 다른 인권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으며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했습니다. 인권 침해가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아동이 그들을 위한 특정한 국제 메커니즘에 진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의견 청취와 참여의 궁극적이며 실질적인 예입니다.

제3선택의정서(OPIC) 홈페이지 방문하기: <https://opic.childrightsconnect.org/>

OPIC 안내서는 왜 필요할까요?

Child Rights Connect는 OPIC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에 처음 이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2019년 4월은 OPIC이 발효된 지 5년, 2019년 11월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이 체결된 지 30년이 됩니다. 아동권리위원회의 첫 번째 견해(Views) 채택, 최초 조사보고서 발간 및 이행지침(Working methods) 마련 등 OPIC의 진전을 담아내기 위하여 이 책자의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아동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OPIC에 대해 알고 그 메커니즘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OPIC의 신속한 비준을 보장하며, 아동을 포함한 아동인권 옹호자들이 아동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모색하고 법적 정책적 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도록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bbreviations

Child Rights Connect WG	Working Group of Child Rights Connect Child Rights Connect 실무그룹
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유엔인권이사회
ICER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
OEWG	Open-ended working group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유엔인권이사회 개방형실무그룹
OP	Optional Protocol 선택의정서
OPAC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IC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아동의 개인청원권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ICESCR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OPSC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UN	United Nations 유엔(국제연합)
UNCRC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엔아동권리협약
UNGA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유엔 총회

목차

본 안내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약어, 자주 묻는 질문, OPIC 전문, 추가적인 참고자료와 웹사이트 목록, 안내서에 등장하는 주요 용어 해설도 담고 있습니다.

1장: OPIC이란?	1
2장: OPIC의 주요 날짜 및 역사적 배경	5
3장: OPIC 한눈에 보기	9
4장: OPIC의 핵심 조항 해설	12
부록 #1: 자주 묻는 질문	27
부록 #2: OPIC 전문	30
참고자료와 웹사이트 목록	39
주요 용어 사전	40

OPIC 그리고 비준 옹호 전략 및 아동의 사법 접근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면 Child Rights Connect에서 OPIC만 다루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opic.childrightsconnect.org/>.



본 보고서의 모든 부분은 작성자의 허가를 받아 복사, 번역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무료로 배포하거나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유료로 배포할 수 있으며 Child Rights Connect가 저자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본 번역본은 Child Rights Connect의 허가를 받아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번안하였으므로, 번역본을 배포, 사용할 시 저자 Child Rights Connect와 번역 국제아동인권센터를 표기하여 사용하십시오.

본 자료를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세한 내용은 Child Rights Connect(secretariat@childrightsconnect.org)에 문의하십시오.

OPIC이란?

개인청원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로도 알려져 있는 OPIC¹은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아동인권 침해에 관한 진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권조약입니다. 위원회는 OPIC에 따라 본 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의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아동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OPIC을 구성하는 네 가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 청원 절차; 2) 조정 절차; 3) 조사 절차; 4) 국가 간 청원 절차

1. 개인청원 절차 (OPIC 제6조)

1. '진정 절차'라고도 하는 이 절차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AC),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OPSC)가 보장하는 권리를 아우릅니다. 이 조약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아동, 아동단체,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진정 또는 청원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2. UNCRC, OPAC, OPSC를 비준한 당사국인 국가가 아동권리를 침해한 사안이어야 하며, 국가는 OPIC의 비준 또는 가입을 통해 진정을 접수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해야 합니다.
3. 이 절차는 준사법적 메커니즘입니다: 접수된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국가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가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가는 OPIC을 비준함으로써, 위원회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고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4. 청원인은 청원을 제출하기 전에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제수단을 모두 선행'해야 합니다.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단,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제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장기화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5.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는 절차이지만, 위원회는 당사자를 직접 만나거나 화상/원격 회의를 통해 심의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일 때, 아동 최상의 이익인 경우에만 구두 심의가 요청됩니다.

¹ 청원 절차는 핵심 인권조약의 일부 또는 핵심 인권조약에 대한 선택의정서로 만들어질 수 있다. 선택의정서는 정부의 비준이 필요한 독립적인 조약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청원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의정서를 통해 만들어져야 했다.



여기서 잠깐!

OPIC의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 "집단 청원"을 조약에 포함할 것인지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기구, 옴부즈퍼슨 기구, NGO가 개별 피해자를 명시하지 않고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방안은 OPIC의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조정 절차 (OPIC 제9조)

1. 조정 절차는 청원 당사자, 즉 청원인과 관련 당사국이 청원에 대한 우호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2. 위원회는 우호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하거나 지원을 제공합니다.
3. 조정은 UNCRC, OPSC, 또는 OPAC에 명시된 의무에 대한 존중에 기초해야 합니다.
4. 위원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우호적 조정의 합의만이 청원 심의를 종결합니다.
5. 우호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 청원 절차에 따라 청원 조사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잠깐!

조정 절차는 200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3. 조사 절차 (OPIC 제13조)

1. 조사 절차는 당사국이 OPIC에 비준하고 조사 절차를 수락한 경우, 위원회가 UNCRC, OPSC, 또는 OPAC의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침해 혐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2. 조사 절차는 선택적 메커니즘입니다: 제13조 제7항은 OPIC에 비준한 당사국이 선언의 방식으로 조사 절차를 "opt-out(선택적 배제)" 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국은 제13조 제8항에 따라 "opt-out"의 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위원회는 아동권리에 대한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침해를 알리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중에 위원회는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국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는 동안 위원들은 정부 및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청원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들은 관련된 특정 장소(예: 요양 시설, 구금시설, 학교 등)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5. 조사 후 위원회는 조사 요약, 조사 결과(심각하거나 조직적인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당사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잠깐!

누구든지 위원회에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아동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청원 절차와 달리, 조사 절차는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구제수단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피해자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8년 6월, 위원회는 칠레의 대안 양육에 관한 첫 조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4. 국가 간 청원 절차 (OPIC 제12조)

1. 국가 간 청원 절차는 다른 당사국의 조약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된 조약기구(이 경우, 아동권리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국가 간 청원 절차는 선택적 메커니즘입니다: 이와 관련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고 선언한 당사국에게만 적용됩니다(opt-in procedure, 선택적 동의 절차).



여기서 잠깐!

국가 간 청원 절차는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ICERD, 인종차별철폐협약)²에 도입된 이후로 지금까지 총 3번 이용되었는데, 모두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따라 2018년에 이용된 것입니다.

² 더 많은 정보는 다음 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s://www.ohchr.org/EN/HRBodies/CERD/Pages/InterstateCommunications.aspx>

OPIC의 주요 날짜 및 역사적 배경

OPIC의 주요 날짜

2009.06.17	유엔인권이사회(HRC)는 청원 절차에 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를 논의하는 정부간 개방형실무그룹(OEWG)을 만들었습니다. ³ 개방형실무그룹은 2009년 12월에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⁴
2010.03.24	유엔인권이사회는 개방형실무그룹의 보고서를 토대로 제3선택의정서를 추진하며, 개방형실무그룹에게 선택의정서 초안 작성 권한을 부여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⁵
2011.02.16	개방형실무그룹은 10일 동안의 협의를 거쳐 선택의정서 최종안을 채택했습니다. ⁶
2011.06.17	유엔인권이사회는 선택의정서 최종안을 채택하여 유엔총회(UNGA)에 회부했습니다.
2011.12.19	유엔총회는 선택의정서 최종안을 청원 절차에 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로 채택하여 새로운 국제 조약으로 만들었습니다.
2012.02.28	아동의 청원 절차에 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인 "OPIC"은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의 공식 행사에서 각국의 서명과 비준을 위해 공개되었습니다.
2013.04.08	위원회는 OPIC의 절차 규칙 을 채택했습니다.
2014.01.14	OPIC을 비준한 10번째 국가는 코스타리카입니다. OPIC 비준 국가: 알바니아, 볼리비아, 가봉, 독일, 몬테네그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태국
2014.04.14	OPIC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2015.10.02	위원회는 OPIC에 따른 개인청원 제출에 관한 표준 양식 을 채택했습니다.

³ 2009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새로운 청원 절차를 구체화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개방형실무그룹(OEWG)을 수립하는 첫 번째 결의안(A/HRC/RES/11/1)을 채택했다.

⁴ 2009년 12월에 개방형실무그룹(OEWG)은 3일간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당초 5일간 계속될 예정이었으나 단축되어야 했다) 이 기간 동안 당사국 대표, 유엔 기관, 독립 전문가, NGO 및 기타 활동가들은 선택의정서의 다양한 측면을 논의했다.

⁵ 2010년 3월에 유엔인권이사회는 개방형실무그룹(OEWG)의 위임 사항을 단순히 선택의정서의 필요를 '고려하는 것'에서 실제 절차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바꾸는 결의안(A/HRC/RES/13/3)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또한 의장이 다음 회의를 위해 선택의정서의 초안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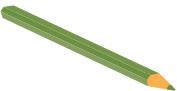
⁶ 개방형실무그룹(OEWG)은 2010년 12월과 2011년 2월에 10일 동안 만나 새로운 의정서 초안을 작성했다. 2011년 2월 16일에 개방형실무그룹(OEWG)은 최종 선택의정서 초안을 채택했고, 검토 및 채택을 위해 이 최종안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OPIC의 주요 날짜 (계속)

2017.06.02	위원회는 OPIC에 따라 제출된 개인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이행지침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2018.01.25	위원회는 덴마크를 상대로 한 청원에 관하여 채택된 첫 번째 견해를 공표했습니다.
2018.06.01	위원회는 칠레에 대한, 최초로 종결된 조사 절차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했습니다.
2019.01	위원회는 제80차 회의에서 OPIC의 잠정적 조치 지침을 공표했습니다.
2019.11	위원회는 제82차 회의에서 개인청원에 대한 첫 번째 후속 조치 경과 보고서를 공표했습니다.
2020.01	위원회는 제83차 회의에서 제3자 개입에 관한 지침을 공표했습니다.





OPIC이 탄생한 배경

-
- 1999** 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10주년 기념일에 "협약에 관한 국제적 수준의 법적 구제책의 활용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청원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선택의정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당사국이 이와 관련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독려했습니다.⁷
-
- 2001** 독일의 아동권리 NGO인 Kindernothilfe는 청원 절차를 도입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새로운 선택의정서에 관한 NGO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
- 2006** 국내적, 지역적 및 국제적 아동권리 단체들이 아동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법적 구제책의 활용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Kindernothilfe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인 캠페인이 되었습니다.
-
- 2008** 이 캠페인은 Child Rights Connect(당시 유엔아동권리협약 NGO 그룹)의 실무 그룹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창립 단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Child Rights International Network (CRIN),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Kindernothilfe, Plan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SOS Villages International,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 (OMCT), World Vision International. 이로써 국제적인 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
- 2009** Child Rights Connect 실무그룹은 유엔 회원국 및 NGO와 유엔 전문가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제네바와 국가 차원의 전문가 회의, 유엔인권이사회의 공동성명, 제네바와 수도에서의 로비와 같은 중요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 ‘우호적인 국가들로 구성된 핵심 그룹(Core group of friendly States)’이 결성되었고 이 그룹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새로운 선택의정서를 제안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2009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새로운 선택의정서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최초의 “개방형실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Child Rights Connect 실무그룹은 선택의정서의 부가 가치를 설명하고 당사국에 새로운 선택의정서의 구체화를 요청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09년 12월, 개방형실무그룹은 5일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⁷ 14쪽 보기: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Documents/Recommandations/ten.pdf>



OPIC이 탄생한 배경 (계속)

2010 2010년 3월, 개방형실무그룹은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유엔인권 이사회는 새로운 선택의정서를 구체화하기 위해 개방형실무그룹의 임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방형실무그룹 의장은 협의의 기초로 사용될 초안을 작성하여 2010년 9월에 회람했습니다. Child Rights Connect 실무그룹은 의장의 제안에 따라 2010년 10월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10년 12월, 개방형실무그룹은 5일 동안 1차 협의를 진행하였고, Child Rights Connect 실무그룹은 논의된 각 항목에 대하여 공동 구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11 2011년 1월, 의장은 1차 협의에 이어 수정된 선택의정서 초안을 회람했습니다. Child Rights Connect 실무그룹은 수정된 선택의정서 초안에 대한 새로운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11년 2월, 개방형실무그룹은 2차 및 최종 협의를 위해 5일 동안 진행하였고, Child Rights Connect 실무그룹은 논의된 각 항목에 대한 공동 구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섯 번째 날, 개방형실무그룹은 잠정적인 최종안을 채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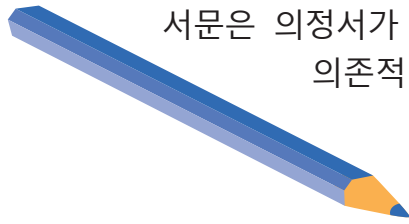
2011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는 선택의정서 최종안을 채택했고, 최종 채택을 위해 유엔총회에 회부했습니다.

2011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선택의정서 최종안을 채택하여 새로운 국제 조약이 되었습니다.



OPIC 한눈에 보기

서문



서문은 의정서가 만들어진 이유와 취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서문은 "아동의 특별하고 의존적인 지위가 그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책 요구에 있어 실질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정서는 아동이 그들의 권리 침해에 대해 진정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지역적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보완할 것"임을 고려합니다.

선택의정서의 적용 범위 (제1조)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아동인권 침해에 관한 조사 절차를 위한 청원과 정보는 선택의정서에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와 관련되어 있고, 해당 국가가 UNCRC, OPSC, OPAC의 당사국이면 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절차 규칙 (제2조, 제3조)

위원회는 아동 최상의 이익, 아동의 의견이 청취될 권리 및 아동의 전반적인 권리와 관련하여 청원의 심의 권한을 행사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절차 규칙은 아동을 고려한 절차를 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며, 아동을 대리하는 보호자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수단을 포함합니다. 위원회는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청원에 대한 심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제4조)

OPIC에 비준한 당사국은 OPIC과 관련하여 위원회와 소통하거나 협력하는 모든 개인을 인권 침해, 학대 또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개인 또는 집단의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청원 (제5조)

UNCRC, OPSC, OPAC의 당사국이라면 해당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권리 침해에 대해 개인/집단 또는 개인/집단을 대신하여 개인청원을 낼 수 있습니다.

잠정적 조치 (제6조)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 집단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는 해당 국가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청원 심의 절차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개인청원 심의의 첫 번째 단계는 OPIC에 열거된 모든 적격성 판단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청원적격 단계입니다. 청원이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해당 국가는 이를 통지받으며, 청원에 대한 설명과 해명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양측 당사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청원의 본안판단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심의는 비공개 회의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사항(권고사항이 있을 경우에만)은 당사국에 전달됩니다. OPIC은 해당 국가가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사항에 따라 취한 조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조정 (제9조)

모든 조정은 위원회의 후원 하에 이루어지며 UNCRC, OPSC, OPAC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청원에 대한 심의는 종료됩니다.

국가간 청원 (제12조)

선언을 통해 이러한 절차를 수락한 당사국은 위원회에 다른 OPIC 당사국으로부터 해당 국가가 UNCRC, OPSC, OPAC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청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 청원을 제출하는 국가도 해당 국제인권조약에 비준하거나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조사절차 (제13조, 제14조)

OPIC 당사국이 이 절차를 제외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당사국의 UNCRC, OPSC, OPAC에 명시된 권리의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침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접수받고, OPIC에 따른 조사를 기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가 동의하는 경우 방문조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관련 국가가 취한 조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후속 절차도 진행됩니다.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 (제15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견해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있어 기술적 조언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유엔 산하의 특화된 기구, 기금, 프로그램과 자격이 있는 다른 기구들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정서의 보급 및 정보 (제17조)

OPIC 당사국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OPIC과 위원회의 견해 및 권고사항을 보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한시적 관할 (제20조)

위원회는 OPIC 제7조에 열거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즉, "그 사건이 발생일 이후에 계속되지 않는 한") 해당 국가에 대해 OPIC이 발효된 이후에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최종규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OPIC이 포함하는 다수의 최종규정은 유사한 조약들의 표준 조항입니다. 최종규정은 OPIC의 서명, 비준, 가입, 발효, 개정 절차, 폐기 통고 및 총회에 대한 위원회의 보고에 대한 것입니다.



OPIC의 핵심 조항 해설



제1조 - 아동권리위원회의 권한

1. 당사국은 본 의정서에 기재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이 동 의정서의 회원국이 아닌 경우(비준하지 않은 경우), 그 회원국의 아동인권 침해문제에 관하여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3. 협약 당사국이 동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청원을 받을 수 없다.

1조 들여다보기

위원회가 청원을 접수하려면:

- 청원은 청원이 제기된 국가가 비준한 조약에 명시된 권리의 침해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 해당 국가는 OPIC을 비준한 상태여야 합니다.

1조의 적용

해당 국가가 OPIC을 비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어떠한 청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당 국가가 OPIC, UNCRC, OPSC, OPAC에 비준한 경우, 각 조약에 명시된 권리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OPIC 제1조는 제5조와 함께 읽어주세요).

- 해당 국가가 OPIC, UNCRC, OPSC에 비준한 경우, 청원은 UNCRC 및 OPSC에 명시된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고, OPAC에 명시된 권리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국가가 OPIC, OPSC, OPAC에 비준한 경우, 청원은 OPSC 및 OPAC에 명시된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고, UNCRC에 명시된 권리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2조와 제3조 -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일반원칙과 (위원회의) 절차 규칙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일반 원칙

1. 동 의정서에 의해 수여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는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또한, 아동의 권리와 견해가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의 견해는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부합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3조 절차 규칙

1. 위원회는 청원 절차를 진행할 때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아동을 고려한 절차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아동을 대리하는 보호자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상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에 기반을 두지 않은 청원의 심리를 거부할 수 있다.

2조와 3조 들여다보기

위원회는 아동 최상의 이익과 아동의 의견이 청취 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OPIC의 조항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OPIC의 절차 규칙**은 아동을 민감하게 고려하는 절차 (child-sensitive procedures)를 보장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청원을 심리하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해치면서 대리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청원과 같은 경우).

2조와 3조의 적용

위원회의 절차 규칙은 이러한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준수되는지 설명합니다. 특히, 위원회는 청원을 신속하게 심리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아동(들)이 대리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압력이나 유인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규정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청원인에게 절차의 시기 및 진행 상황, 결정에 관해 신속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정보는 성인과 아동 모두가 적절하고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며, 가능한 한 청원을 제출한 자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조정됩니다.

위원회는 제70차 회의(2015)에서 OPIC에 따라 제출된 개인청원을 다루는 **이행지침**을 채택했으며(2017년 개정), 아동이 제출한 청원을 심사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이 제출한 문서에 대한 응답은 아동 친화적인 언어로 작성됩니다.

제4조 - 보호조치

1. 당사국은 청원제기로 인한 국내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제3선택의정서에 준하는 청원이나 위원회에 대한 협력으로 인해 개인이 인권침해나 학대 또는 위협을 받지 않도록 이를 보장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동의 없이 개인이나 집단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4조 들여다보기

누구든 OPIC에 따라 위원회와 협력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위협이나 인권침해를 겪지 않아야 합니다.

위원회와 협력하는 사람의 신원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당사국, 위원회 또는 그 밖의 누구에 의해서도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4조의 적용

당사국이 청원 당사자 및 관련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당사국에 긴급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가 이러한 요청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공개적인 성명서를 공표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 개인청원

- 청원은 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당사국이 비준한 아래와 같은 국제인권규약들에 명시된 권리들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청원을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제출할 수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무력분쟁에 참여된 아동을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청원이 한 개인이나 집단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요하며 만일 동의를 없는 경우 대리인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청원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5조 들여다보기

다음의 사람들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개인
- 피해자 집단
- 피해자의 대리인
- 피해자 집단의 대리인

피해자의 대리인이나 피해자 집단의 대리인이 청원을 제출한 경우, 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청원하고 있음을 위원회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청원은 해당 국가가 OPIC을 비준한 경우에 한해 UNCRC, OPSC, OPAC에 명시된 권리들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OPIC 1조에 따른 설명 참조).



여기서 잠깐!

- 2020년 8월까지 위원회는 인용(merits, 아동인권 침해 인정) 12건, 소 취하(inadmissibility, 청원 부적격) 17건, 기각(discontinued, 청원 종료) 10건을 포함하여 개인청원에 대해 39건의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위원회가 채택한 결정과 주요 동향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3자의 개입을 장려하기 위해 위원회는 웹사이트에 **심리 대기 중인 사례**를 요약한 표를 주기적으로 게시합니다. 심리 대기 중인 사례와 주요 동향이 궁금하다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표를 보려면 아래로 스크롤해야 됩니다). 2020년에 위원회 제3자 개입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고 해당 내용은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5조 - 개인청원 (계속)

5조의 적용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는 위원회에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동인권 침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당사국에서의 법적 능력과 지위와 관계없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대리인이 청원을 제출할 경우, 대리 자격에 대해 피해 아동이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피해자가 아기인 경우 대리인은 아기가 대리에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 유사하게 피해자가 실종, 유괴되었거나 수감되었지만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청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대리인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추가적인 정보나 문서를 제3자에게 기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동의를 할 수 없었던 피해자에게 청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피해자의 견해는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반영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청원이라면 청원인이 아동의 동의 없이 대리 청원을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⁸

청원인이 아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청원인의 신원이나 신분증명서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국가가 청원의 인적 관할(rationae personae)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위원회는 "입증책임은 청원인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청원인과 당사국이 언제나 동등하게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당사국만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⁹

위원회에 개인청원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의 **부록 1: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하거나 '**Submission of an individual communication**'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⁸ L.H.L and A.H.L. v. Spain (CRC/C/81/D/13/2017) (inadmissible) para 9.2; Y and Z. v. Finland (CRC/C/81/D/6/2016) (inadmissible) para. 9.4

⁹ D.D. v. Spain (CRC/C/80/D/4/2016) (admissible) para 13.3

제6조 - 잠정적 조치

1. 청원이 접수된 이후나 청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언제든지 당사국의 침해에 대해 피해자의 회복이 어려운 치명적 손상(irreparable damage)을 막기 위한 예외적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인 경우, 아동권리위원회는 필요하다면 당사국에 잠정적 조치 요청을 보낼 수 있다.
2. 제6조 제1항은 위원회가 당사국에 잠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청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거나 본안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6조 들여다보기

잠정적 조치란 청원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국제적 차원에서 청원을 제기하고 구제받을 권리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잠정적으로 취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청원이 제출된 국가에게 청원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법적 또는 행정적 결정(예: 불법 이주민의 추방)의 보류와 같은 잠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가 잠정적 조치 요청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위원회는 2019년 1월에 [잠정 조치에 대한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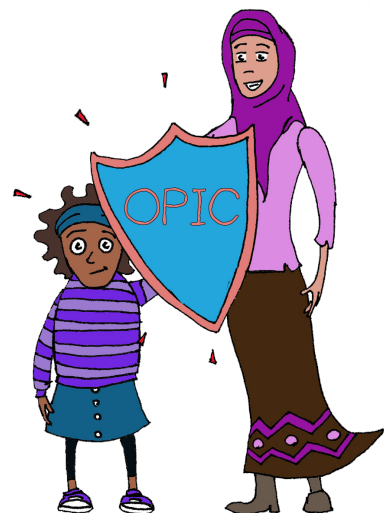
6조의 적용

청원을 제출하고 위원회가 잠정적 조치 요청을 고려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러한 입장을 청원 시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위원회 이행지침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잠정적 조치에 대한 결정이 채택될 것입니다.¹⁰

잠정적 조치가 필요한 모든 청원 또는 조사는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위원회가 국가에 잠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요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개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잠정적 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일부 사례는 기존 인권조약기구의 구제를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였습니다.



¹⁰ OPIC, H.21 단락에 따라 개인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이행지침.

 제7조 - 청원적격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청원에 대하여 부적격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a. 청원이 익명으로 이루어진 경우
- b. 청원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c. 청원이 청원권의 남용이거나, 협약 또는 선택의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d. 동일 사안이 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된 경우이거나 다른 국제적 차원의 조사나 조정절차에서 검토되었거나 검토 중인 경우
- e.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구제 수단이 선행되지 않은 경우 본 항은 구제 수단의 적용이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f. 청원이 분명한 근거 없이 제기되거나 충분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 g. 청원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당사국의 선택의정서 비준 이전에 발생한 경우, 단 발생일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경우는 제외
- h.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을 모두 거친 후 1년 이내에 제기되지 않은 청원인 경우, 단 그 기간 내에 청원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는 제외

7조 들여다보기

청원 절차에는 두 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 청원 “적격 판단” 단계와 “본안 판단” 단계입니다. 위원회는 접수된 청원의 세부 사항과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청원의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청원이 “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장된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본안 판단” 단계로 이동합니다. 청원이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사건의 아동인권 침해 여부가 고려되지 않고 청원이 소 취하됩니다. (위원회에 개인청원을 제출한 후 이루어지는 각 단계와 순서에 대해서는 [OPIC 메커니즘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제7조는 OPIC에 따라 청원이 적격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7조(h)는 다른 청원 절차의 표준 조항이 아니며 OP-ICESCR(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3조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¹¹

¹¹ OP-ICESCR은 OPIC 이전에 유엔이 채택한 청원 절차 중 가장 최신 절차이다. 200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2013년 5월 5일 발효됐다.

제7조 – 청원적격 (계속)

7조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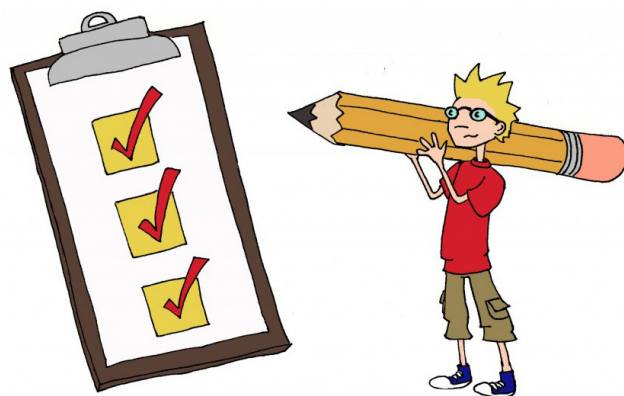
이러한 적격 요건은 유사한 청원 절차에서도 있으며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다른 조약 기구의 해석을 따릅니다. 또한, 청원이 아동을 고려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획기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OPIC 제7조는 제2조, 제3조와 함께 읽어주세요).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인권위원회의 해석을 따랐으며¹², 청원인과 당사국이 증거에 대해 항상 동등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특히 당사국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청원인에게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¹³

위원회는 국내 구제책의 선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국내 구제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면 선행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인권위원회의 해석을 상기했습니다.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청구가 불가피하게 기각되거나 국내 최고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방해하는 경우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¹⁴

그럼에도 아동권리위원회는 구제책의 성공이나 효과에 대한 단순한 의심과 가정으로 청원인의 국내 구제책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청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때 아동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추방 또는 망명의 경우 위원회는 '당사국은 신분증명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청소년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법적 연령이 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될 때까지는 우선 미성년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¹⁶



¹² See Cases *Purna Maya v. Nepal* (CCPR/C/119/D/2245/2013), para. 12.2; *El Hassy v. Libyan Arab Jamahiriya* (CCPR/C/91/D/1422/2005), para. 6.7; and *Medjnoune v. Algeria* (CCPR/C/87/D/1297/2004), para. 8.3.

¹³ *M.T. v. Spain*, CRC/C/82/D/17/2017, para 13.4

¹⁴ *D.C v Germany* (CRC/C/83/D/60/2018), para 6.5. See also, *Pratt and Morgan v. Jamaica*, communication No. 225/1987, paras. 12.3–12.5; *Barzhig v. France*, communication No. 327/1988, para. 5.1; *Young v. Australia* (CCPR/C/78/D/941/2000), para. 9.4.; *R.T. v. France*, communication No. 262/1987, para. 7.4; *S.S. v. Norway*, communication No. 79/1980, para. 6.2; and *Sadic v. Denmark* (CERD/C/62/D/25/2002), para. 6.5].

¹⁵ *Ibid.* See also, *R.T. v. France*, communication No. 262/1987, para. 7.4; *S.S. v. Norway*, communication No. 79/1980, para. 6.2.; and *Sadic v. Denmark* (CERD/C/62/D/25/2002), para. 6.5.

¹⁶ *A.D. v Spain* (CRC/C/80/D/14/2017), para 10.4

제7조 – 청원적격 (계속)

또한, 위원회는 강제송환 금지 사례에 있어, 국가는 수령국에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실제적 위험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일반논평 제6호¹⁷를 따라야 하며, 아동의 송환 결정은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의 고려사항이어야 하고, 그러한 결정은 아동이 송환될 때 안전과 적절한 돌봄 및 권리 향유가 제공 되도록 보장하는 절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공동 일반논평 제3호와 제23호¹⁸를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¹⁹ 아동 최상의 이익은 아동의 송환에 관한 행정적·사법적 결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개별적인 절차를 통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²⁰

2020년 8월까지 위원회가 부적격으로 판단한 청원들²¹:

- 5건의 사건 또는 청구가 제7조(c)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단
- 2건의 사건 또는 청구가 제7조(d)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단
- 3건의 사건 또는 청구가 제7조(e)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단
- 11건의 사건 또는 청구가 제7조(f)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단
- 3건의 사건 또는 청구가 제7조(g)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단



여기서 잠깐!

- 적격 요건은 위원회가 받았던 상당수의 청원이 등록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2020년 4월까지 위원회는 300건이 넘는 개인청원을 받았지만, 116건만이 정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사건이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세 가지:
 1. 사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침해된 권리 및 침해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본 협약의 적용 대상인 아동이 아닌 성인의 권리와 관련된 청원인 경우
 3. 국내 구제책이 모두 선행되지 않았거나 예외적인 경우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¹⁷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6호. 출신국 외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 결정례, para. 27; K.H., M.H. and E.H. v. Denmark (CRC/C/82/D/32/2017) (inadmissible), para. 8.5; A.P. and K.P. v. Denmark (CRC/C/82/D/33/2017) (inadmissible), para 8.6; A.S. v. Denmark (CRC/C/82/D/36/2019) (inadmissible), para. 9.5

¹⁸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22호.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인권 일반원칙에 관한 유엔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와의 공동논평, 문단. 29-33

¹⁹ 각주 18번의 일반논평 22호, paras. 29 and 33; K.H., M.H. and E.H. v. Denmark (CRC/C/82/D/32/2017) (inadmissible) para 8.5; A.P. and K.P. v. Denmark (CRC/C/82/D/33/2017) (inadmissible) para 8.6; A.S. v. Denmark (CRC/C/82/D/36/2019) (inadmissible) para 9.5

²⁰ 각주 18번의 일반논평 22호, para 30; A.S. v. Denmark (CRC/C/82/D/36/2019) (inadmissible) para 9.5

²¹ 일부 청원은 하나 이상의 적격 요건에 따라 부적격으로 간주 되었다.

제8조 및 제10조 - 청원 송달과 심의

제8조 청원 송달

1. 위원회는 청원의 부적격을 결정하지 않은 한, 청원의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당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그리고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서면이나 진술로 문제에 대해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구제책에 대해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원 심의

1. 위원회는 현재 제기된 청원에 관해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참고하여 가능한 한 빨리 청원의 수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본 의정서의 청원을 심의하게 될 때 비공개회의를 개최한다.
3. 위원회가 잠정적 보전 조치를 요청한 곳에서는 청원심의를 촉진하여야 한다.
4. 검토 중인 청원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위원회는 협약 제4조에 따라 당사국에서 채택할 조치들의 합리성에 대해 고려해야하며 그렇게 함으로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이행을 위해 광범위한 정책적 조치를 채택해야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5. 청원 검토가 끝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청원심의 견해를 송달하되, 만일 권고사항이 있다면 권고문과 함께 해당국으로 보낸다.

8조와 10조 들여다보기

본 조항들은 위원회가 적격성이 인정된 청원을 받았을 때, 그리고 특정 시점에서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8조 제2항의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그리고 6개월 이내에'라는 문구는 국가가 다른 청원 절차보다 신속한 응답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표준 문구는 '6개월 이내').

또한 제10조는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특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1) 위원회가 잠정적 보전 조치를 요청한 경우(OPIC 제6조 참조), 해당 청원심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청원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위원회는 "협약 제4조의 당사국에서 채택할 조치들의 합리성"에 대해 고려하는 구체적인 검토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8조와 10조의 적용

OPIC 제10조 제4항은 OP-ICESCR 제8조 제4항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는 아동권리 협약 제4조에 따라 당사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의무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OPIC 제10조 제4항이 갖는 추가적인 의미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9조 - 조정

1.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이나 선택의정서상 의무이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 조정을 수락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후원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본 선택의정서상 청원 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9조 들여다보기

이 조항은 위원회가 청원이 제기된 권리 침해 혐의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도 우호적인 조정(friendly settlement)을 통해 청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의 후원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청원 절차는 종료됩니다.

9조의 적용

위원회는 절차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국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²²

OPIC 제9조는 OP-ICESCR 제7조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지만, OPIC 제9조 제2호를 보면 '위원회의 후원으로 성립되면'이라는 획기적인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의 정확한 범위는 위원회의 실무례에 따라 더 자세히 정의되겠지만 일부 요소는 새로운 절차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사안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거나, UNCRC, OPSC 및/또는 OPAC에 근거하여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조정 절차를 거부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 위원회는 UNCRC, OPSC 및/또는 OPAC에 근거하지 않은 어떠한 조정도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²² OPIC에 제출된 개인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이행지침, F.15.



제12조 - 국가 간 청원

1. 당사국이 아래의 법률문서들을 이행하지 않은 다른 당사국에 대한 청원을 할 경우, 당사국은 위원회가 이를 수용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선언한다.
 - (a) 유엔아동권리협약
 - (b)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 (c) 무력분쟁지역 아동에 관한 선택의정서
2. 위원회는 본 제도에 대한 인정을 선언하지 않는 당사국에 대한 청원을 받지 않는다. 또한 선언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들어온 청원은 심의하지 않는다.
3. 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에 관련된 사항에 기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 중재를 수락할 수 있다.
4. 본 조항(13조)의 제1항의 선언(당사국이 국가 간 청원제도를 인정한다는 선언)은 당사국과 유엔사무총장이 보관한다. 선언은 언제든지 유엔사무총장에게 통보하므로 철회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선언의 사본을 다른 당사국들에 송달한다. 이러한 철회가 이미 청원된 사안에 영향을 주거나 편견을 갖게 하지 않으며, 새로운 선언이 작성되어 선포되지 않는 한 그 당사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청원은 수용되지 않는다.

12조 들여다보기

OPIC의 국가 간 청원제도를 인정하는 선언을 한 당사국은 해당 선언을 이미 진행한 다른 당사국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양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12조의 적용

지금까지 OPIC에서 이 절차가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제13조 - 심각한 조직적 침해를 위한 조사 절차

1. 만일 위원회가 아동매매, 성매매, 아동 음란물 또는 무력분쟁에 아동 참여 등 협약이나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권리에 대한 당사국의 심각한 또는 조직적인 침해를 알리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통보된 정보의 조사에 당사국의 협력을 위하여 소환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관련된 정보에 관하여 지체 없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하여야 한다.
2. 여타의 신뢰할 만한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국에 의해 제출된 어떠한 보고서를 참작함에 있어, 위원회는 조사를 위한 1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즉각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국의 허가나 동의가 있을 경우 조사는 해당지역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3. 조사는 극비로 수행되어야 하며, 당사국의 협력은 모든 단계의 절차에 요청되어야 한다.
4. 조사의 결과를 검토한 후, 위원회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견이나 권고를 포함한 조사 결과 내용을 관련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관련 당사국은 조사 결과 내용과 위원회의 의견과 권고를 통보받은 후 가능한 빨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제13조 제2항에 따른 관련된 조사에 관하여 그와 같은 절차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 후에 선택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 개요를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한다.
7. 각 당사국은 본 선택의정서를 서명, 비준 혹은 가입할 때 본 의정서 제13조 제1항에 열거된 일부 또는 전부의 문서에 기술된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8. 어떠한 당사국도 제13조 제7항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언제든지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13조 들여다보기

조사 절차란, 당사국이 OPIC을 비준하고 조사 절차를 수락한 경우, 위원회가 당사국의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UNCRC, OPSC, 및/또는 OPAC 위반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위원회는 칠레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권리 침해 사항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심각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권리 침해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 침해의 규모, 만연한 정도, 성격 및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²³ 이와 유사하게 위원회는 ‘**조직적인**’이라는 용어는 반복적인 침해를 초래하는 행위의 조직적 성격을 뜻하고, 임의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²⁴

²³ 보고서, 112 단락 참조.

²⁴ 상세서, 113 단락 참조.

제13조 - 심각한 조직적 침해를 위한 조사 절차 (계속)

조사 절차는 선택적인 절차입니다. 제7항은 OPIC 당사국이 조사 절차에 대한 “opt-out(선택적 배제)”을 선언하도록 허용하는 반면, 제8항에서는 선택적 배제 선언을 한 당사국이 선언을 철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아동인권 침해를 보여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조사를 수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13조의 적용

1. 위원회는 UNCRC, OPAC 및/또는 OPSC의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침해를 나타내는 정보를 해당 조약과 OPIC을 비준한 당사국으로부터 제출받는다.
2. 그 후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정보 검토에 협조하고 제출받은 정보와 관련해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3. 위원회는 제출받은 정보의 신뢰성 여부와 해당 침해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4. 이를 위해 위원회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참조하고, 정보 작성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국에게 더 심도 있거나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당사국에 국가 방문을 요청 및 수행할 수 있다.
5. 위원회가 국가 방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당사국이 이를 수락할 경우, 위원회 구성원은 당사국의 정부대표, 시민사회 대표, 그리고 피해 당사자(alleged victims)를 만날 수 있다. 또한 특정 장소(예: 구치소 및 교도소)를 방문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조사를 담당한 보고관의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결과, 의견 또는 권고를 당사국에 전달한다.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의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후 가능한 빨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위원회의 의견 또는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인 모든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절차가 완료되고 당사국과 협의를 진행한 후, 위원회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조사 결과 요약물을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OPIC 제16조).

또한 위원회는 UNCRC, OPSC 및/또는 OPAC에 따른 국가의 정기 보고서를 포함하여 해당 국가의 견해 또는 권고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관련 당사국의 협조를 구해야 하지만 당사국이 OPIC 제13조 제7항에 근거하여 이 메커니즘을 수락하면 위원회는 당사국의 승인이나 협력 없이도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방문은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NGO를 포함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는 UNCRC 및/또는 선택의정서의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침해를 나타내는 정보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에서 세부 필요 조건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청원



개인청원을 아동권리위원회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위원회가 청원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 익명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조약(UNCRC, OPAC 및/또는 OPSC) 그리고 OPIC 모두에 가입/비준한 국가와 관련 있어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해당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청원이 제기된 당사국에서 법적 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무관)
 - 지정된 대리인
 -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다른 사람
 - 명시적 동의 없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대리하지만, 작성자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 침해가 발생한 국가에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 청원 작성자 및/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이름을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공개하지 않되, 명시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이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OPIC에 따른 절차 규칙 13 및 29.4

위원회가 청원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 적용 가능한 국내의 구제책이 모두 선행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구제책이 지나치게 지체되거나 실효적인 구제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원회나 다른 국제 조사 또는 조정 절차에서 심의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권리 침해가 청원일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원 대상이 되는 국가에서 OPIC이 발효되기 전에 권리 침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 국내 구제책을 소진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청원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OPIC에 따른 절차 규칙 16

진정서 제출 양식 작성 방법:

아동권리위원회는 **OPIC에 따른 개인청원 제출에 관한 표준 양식**을 통해 제출 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만약 청원을 제출하고 위원회가 잠정적 조치 요청을 심의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청원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잠정적 조치가 필요한 청원이나 조사에는 신속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위원회로부터 청원을 심의 받는 방법:

작성이 완료되면, 청원서(그리고 청원서 제출 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청원팀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Petitions Team (청원팀)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1211 Geneva 10, Switzerland
E-mail : petitions@ohchr.org

청원 대상 국가에 추가 정보, 설명 및 의견 요청:

청원팀은 추가 정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등록된 경우, 청원이 제기된 당사국에 이를 공유하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청원 작성자와 청원이 제기된 당사국은 서로의 의견에 대해 항상 통지받으며, 이에 대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OPIC에 따른 절차 규칙 15, 16 및 18

Q OPIC의 개인청원 절차에서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OPIC에 따르면, UNCRC, OPSC 및/또는 OPAC에 따른 자신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제출 시점에 아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청원이 아동권리위원회에 도달하는 시점에 성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나이, 국내의 법적 지위 또는 능력에 관계없이 대리인 없이 직접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청원이 제출된 당사국의 국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Q 피해자 또는 대리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있나요?

- 네. OPIC은 당사국이 "[그들의] 관할권에 있는 개인이 위원회에 대한 청원 및 협력의 결과로 인권 침해, 학대 또는 위협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합니다.²⁵
- 위원회는 당사국이 청원인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은 경우, 당사국이 해당 위반사항을 중지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긴급히 취하고, 서면 설명 및 해명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²⁶

조사 절차

Q 조사 절차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개별 청원 및 조사는 OPIC에 따른 서로 다른 두 가지 메커니즘입니다.

당사국이 UNCRC 및/또는 OPAC 및/또는 OPSC에 명시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조직적인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위원회에 조사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조사 절차는 청원 절차와 달리 피해자 개인의 신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많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항을 개인 식별 없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청원 절차와 달리 조사 절차에는 허용 조건이 없습니다. 특히, 조사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국내 구제책을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및/또는 조직적인 침해의 일반적인 상황을 다루기 위한 비교적 신속한 대응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조사 절차는 위원회가 개인청원 절차에서 발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고를 발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조사 대상 국가를 넘어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회의 권고는 국가 규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옹호 도구입니다.

더 많은 <자주 묻는 질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²⁵ OPIC 제4조 참조.

²⁶ 위원회의 OPIC에 따른 절차 규칙 4 참조(CRC/C/62/3).

OPIC 전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번안

개인청원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본 의정서의 당사국은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는 유엔 현장에서 천명한 원칙에 부합할 것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에서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된 권리를 인정할 것을 유념하며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을 재확인하며

아동은 권리의 주체자이며 존엄성과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능력(evolutionary capacities)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하며

의존적인 아동의 특성으로 인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찾는데 진정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며

동 의정서는 아동이 그들의 권리침해에 대응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락하는 국내 및 지역의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이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응하는 구제책을 찾는데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그러한 구제책이 모든 수준(at all levels)에서 아동 친화적인 절차(child-sensitive procedures)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당사국은 자신의 권리가 국내 수준에서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아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 아동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국내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을 복돋우며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이러한 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와 다른 관련된 특별한 기구의 중요한 역할을 상기하며

국내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협약과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이행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동 의정서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며, 다음 사항에 동의하였다.



1부 일반 규정

제1조 아동권리위원회의 권한

1. 당사국은 본 의정서에 기재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이 동 의정서의 회원국이 아닌 경우 (비준하지 않은 경우) 그 회원국의 아동권리 침해문제에 관하여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3. 협약 당사국이 동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청원을 받을 수 없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일반 원칙

동 의정서에 의해 수여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는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의거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의 권리와 견해가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의 견해는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부합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3조 절차 규칙

1. 위원회는 청원절차를 진행할 때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아동을 고려한 절차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아동을 대리하는 보호자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상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에 기반을 두지 않은 청원의 심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조 보호조치

1. 당사국은 청원제기로 인한 국내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제3선택의정서에 준하는 청원이 나 위원회에 대한 협력으로 인해 개인이 인권침해나 하대 또는 위협을 받지 않도록 이를 보장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동의 없이 개인이나 집단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2부 청원절차

제5조 개인청원

1. 청원은 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당사국이 비준한 아래와 같은 국제인권규약들에 명시된 권리들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청원을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제출할 수 있다;
 - a. 유엔아동권리협약
 - b.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c. 무려분쟁에 참여된 아동을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 청원이 한 개인이나 집단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요하며 만일 동의가 없는 경우 대리인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청원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제6조 잠정적 조치

1. 청원이 접수된 이후나 청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언제든지 당사국의 침해에 대해 피해자의 회복이 어려운 치명적 손상(irreparable damage)을 막기 위한 예외적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인 경우, 아동권리위원회는 필요하다면 당사국에 잠정적 조치 요청을 보낼 수 있다.
2. 제6조 1항은 위원회가 당사국에 잠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청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거나 본안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7조 청원적격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청원에 대하여 부적격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a. 청원이 익명으로 이루어진 경우
 - b. 청원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c. 청원이 청원권의 남용이거나, 협약 또는 선택의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d. 동일 사안이 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된 경우이거나 다른 국제적 차원의 조사나 조정 절차에서 검토되었거나 검토 중인 경우
 - e.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구제 수단이 선행되지 않은 경우. 본 항은 구제 수단의 적용이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f. 청원이 분명한 근거 없이 제기되거나 충분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 g. 청원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당사국의 선택의정서 비준 이전에 발생한 경우. 단, 발생일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경우는 제외
 - h.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을 모두 거친 후 1년 이내에 제기되지 않은 청원인 경우. 단, 그 기간 내에 청원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는 제외

제8조 청원 송달

1. 위원회는 청원의 부적격을 결정하지 않은 한, 청원의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당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가능 한 빠른 시일 내, 그리고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서면이나 진술로 문제에 대해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구제책에 대해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조정

1.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이나 선택의정서상 의무이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 조정을 수락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후원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본 선택의정서상 청원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제10조 청원 심의

1. 위원회는 현재 제기된 청원에 관해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참고하여 가능한 한 빨리 청원의 수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본 의정서의 청원을 심의하게 될 때 비공개 회의(closed meetings)를 개최한다.
3. 위원회가 잠정적 보전 조치를 요청한 곳에서는 청원 심의를 촉진하여야 한다.
4. 검토 중인 청원이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위원회는 협약 제4조에 따라 당사국에서 채택할 조치들의 합리성에 대해 고려해야하며 그렇게 함으로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이행을 위해 광범위한 정책적 조치를 채택해야 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5. 청원 검토가 끝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청원심의 전해를 송달하되, 만일 권고사항이 있다면 권고문과 함께 해당국으로 보낸다.

제11조 후속조치

1. 당사국은 위원회의 의견과 권고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원회 의견과 혹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를 받고 취한 조치 및 활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된 답변을 작성하여 6개월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12조, 무력분쟁지역 아동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8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견해나 권고사항, 조정안의 이행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황에 대하여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국가 간 청원

1. 당사국이 아래의 법률문서들을 이행하지 않은 다른 당사국에 대한 청원을 할 경우, 당사국은 위원회가 이를 수용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선언한다.
 - a. 유엔아동권리협약
 - b.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 c. 무력분쟁지역 아동에 관한 선택의정서
2. 위원회는 본 제도에 대한 인정을 선언하지 않는 당사국에 대한 청원을 받지 않는다. 또한 선언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들어온 청원은 심의하지 않는다.
3. 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에 관련된 사항에 기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 중재를 수락할 수 있다.
4. 본 조항(13조)의 1항의 선언(당사국이 국가 간 청원제도를 인정한다는 선언)은 당사국과 유엔사무총장이 보관한다. 선언은 언제든지 유엔사무총장에게 통보하므로 철회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선언의 사본을 다른 당사국들에 송달한다. 이러한 철회가 이미 청원된 사안에 영향을 주거나 편견을 갖게 하지 않으며, 새로운 선언이 작성되어 선포되지 않는 한 그 당사국으로부터의 더 이상의 청원은 수용되지 않는다.

3부 조사 절차

제13조 심각한 조직적 침해 위한 조사 절차

1. 만일 위원회가 아동매매, 성매매, 아동 음란물 또는 무력분쟁에 아동 참여 등 협약이나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권리에 대한 당사국의 심각한 또는 조직적인 침해를 알리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통보된 정보의 조사에 당사국의 협력을 위하여 소환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관련된 정보에 관하여 지체 없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하여야 한다.
2. 여타의 신뢰할 만한 정보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국에 의해 제출된 어떠한 보고서를 참작함에 있어, 위원회는 조사를 위한 1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즉각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국의 허가나 동의가 있을 경우 조사는 해당지역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3. 조사는 극비로 수행되어야 하며, 당사국의 협력은 모든 단계의 절차에 요청되어야 한다.
4. 조사의 결과를 검토한 후, 위원회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견이나 권고를 포함한 조사 결과 내용을 관련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관련 당사국은 조사 결과 내용과 위원회의 의견과 권고를 통보받은 후 가능한 빨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제13조 2항에 따른 관련된 조사에 관하여 그와 같은 절차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 후에 선택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 개요를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한다.
7. 각 당사국은 본 선택의정서를 서명, 비준 혹은 가입할 때 본 의정서 제13조 1항에 열거된 일부 또는 전부의 문서에 기술된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할 수도 있다.
8. 어떠한 당사국도 제13조 7항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언제든지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절차 추적

1. 본 선택의정서 제13조 제5항에 명시된 6개월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의정서 제13조에 부합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나 계획된 조치에 대한 정보를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44조와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12조 그리고 무력분쟁 참여 아동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8조에 따라 당사국이 포괄적으로 제출한 보고서가 위원회에 의해 적절성이 인정된 이후에라도, 본 의정서 제13조에 부합하도록 당사국 이 취한 조치들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추가 정보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부 최종 규정

제15조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

1.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서 유엔 산하의 특화된 기구들, 기금, 프로그램과 자격이 있는 다른 기구들에게 기술적인 조언이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소통이나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견해나 권고를 보낼 수 있다. 이때 당사국이 위원회의 견해나 권고에 대해 어떤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함께 보낸다.
2. 위원회는 또한 자문을 의뢰한 기구들에게 관계 당사국의 동의하에 소통 중에 야기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는데, 이는 그 자격 있는 각각의 기구들이 본 선택의정서 하에서 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타당한 방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방안들이 관계 당사국이 협약과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실천하는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제16조 총회에 보고

위원회는 협약 제44조 제5항에 따라 매 2년마다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본 선택의정서 하에서 수행한 그 활동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 선택의정서의 보급 및 정보

각 당사국은 본 선택의정서를 널리 알려야 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견해나 권고사항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성인이나 아동 모두가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입

1. 본 선택의정서는 협약이나 처음 두 개의 선택의정서 중 어느 하나에 서명하고 비준하고 가입한 국가가 서명하도록 열려있다.
2. 본 선택의정서는 협약이나 처음 두 개의 선택의정서 중 어느 하나에 비준하고 가입한 국가가 비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비준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본 선택의정서는 협약이나 처음 두 개의 선택의정서 중 어느 하나에 비준하고 가입한 국가가 가입하도록 열려있다.
4. 가입은 유엔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된다.

제19조 발효

1. 본 선택의 정서는 10번째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후 3개월이 지나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2. 10번째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에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는 그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선택의정서가 발효된다.

제20조 발효 후 발생하는 위반

1. 본 선택의정서가 발효되고 난 후에 비준국이 협약이나 두 개의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어떠한 권리든지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는 전적으로 법적인 권한을 갖는다.
2. 본 선택의정서가 발표된 이후에 어느 국가가 선택의정서 당사국이 되었다면, 그 국가가 위원회에 대하여 갖는 의무사항은 본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이후에 관련 국가에서 발생하는 협약 및 두 개의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권리를 위반한 것에만 관련을 갖는다.

제21조 개정

1. 어떠한 국가든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본 선택의정서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그 제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정할 목적으로 당사국들이 회의를 할 것인지를 통지하면서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 당사국들과 소통한다. 그러한 소통을 시작한 지 4개월 이내에 최소한 당사국들의 1/3이 회의를 원할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이 주최하는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한 당사국들의 2/3가 채택한 수정안은 사무총장에 의해서 총회에 제출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수락하도록 당사국들에 보낸다.
2.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개정안 채택일에 참석한 당사국들의 수락서 기탁이 2/3에 도달하고 30일 이후에 발효된다.

제22조 폐기통고

1. 어떠한 당사국이든 언제든지 본 선택의정서를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폐기를 통고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그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효력을 갖는다.
2. 폐기통고는 폐기가 효력을 갖는 날 이전에 제5조 또는 제12조에 근거하여 제안된 소통이나 제13조에 의해 개시된 조사와 관련하여 본 선택의정서를 계속 적용하는 것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제23조 사무총장에 의한 수탁 및 통보

1. 유엔 사무총장은 본 선택의정서의 수탁자가 된다.
2. 사무총장은 모든 국가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을 통보한다:
 - a. 본 선택의정서의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21조에 의한 본 선택의정서의 발효일과 개정일자;
 - c. 본 선택의정서 제22조에 의한 폐기통보

제24조 언어

1.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와 스페인어로 동등하게 정본으로 작성된 선택의정서는 모두 유엔 공문서 보관소에 기탁된다.
2. 유엔 사무장은 공인된 본 선택의정서 사본을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참고자료 & 웹사이트 목록

OPIC 관련 자료는 Child Rights Connec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opic.childrightsconnect.org/>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http://www.ohchr.org/EN/HRBodies/CRC/Pages/CRCIndex.aspx>
- 국제인권조약 비준 현황
<https://indicators.ohchr.org>
-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영문]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convention-rights-child>
 [한글]
<http://incrc.org/uncrc/>
- OPIC Info Pack (OPIC 안내서 영어 원문)
https://opic.childrightsconnect.org/wp-content/uploads/2020/11/OPIC_info-pack_2020_English.pdf

주요 용어 사전

위원회[Committee]: 아래 **조약기구** 참조.

청원 절차[Communications Procedures]: 또는 “진정 절차”. 국제인권**협약**의 당사국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개인, 단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조약기구**’ 또는 **위원회**에 진정 또는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절차. 단, 이는 국가가 진정 및 청원을 접수받을 수 있는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 경우에만 적용됨. 청원 절차는 **준사법적** 메커니즘으로,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국가에 법적 구속력이 없음.

청원인[Complainant]: 권리가 침해된 아동과 같이 청원을 제기한 개인 또는 집단으로, ‘원고’ 또는 ‘진정인’이라고도 함.

진정 절차[Complaint Procedure]: **청원 절차** 참조.

협약[Convention]: **조약** 또는 **규약**이라고도 하며 이는 국가 간에 서명된 협정. 협약은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States Parties]**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상호 의무를 규정함. 인권 협약의 경우, **당사국**은 관할권 내의 모든 개인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임. 유엔 총회에서 협약이 채택된 이후 유엔 **회원국[Member States]**은 협약을 비준할 수 있으며, 이는 협약에 명시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로 약속하는 것임. 국가가 협약을 비준하면, 협약 조항은 해당 국가의 국내법적 의무의 한 내용이 됨. 유엔 메커니즘은 협약에 명시된 기준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도록 함.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1989년 채택, 1990년 발효): 아동을 위한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협약.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뿐임(원문에 언급된 소말리아는 2015년에 비준함). 또한 이 협약은 비정부기구(NGO)에 이행 모니터링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유일한 국제인권조약.

핵심 그룹[Core Group]: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위한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EWG)을 구성하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을 지원한 초기 국가들을 의미함.

규약[Covenant]: **협약** 참조.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주요 국제인권규약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이 있음.

(조약의) 발효[Entry into Force (of a Treaty)]: 조약의 발효는 조약이 조약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순간. 발효 시점은 조약의 규정을 따름. 이 시점은 조약에 명시된 날짜 또는 지정된 비준국의 수, 승인, 수락 또는 가입이 수탁자에게 기탁된 날짜일 수 있음.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조약이 발효되는 날짜는 조약 조항에 따라 결정됨.

(국가의) 발효[Entry into Force (of a State)]: 이미 발효된 조약은 발효 후 해당 조약에 구속된다는 동의를 표명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해당 조약에 명시된 방식으로 발효할 수 있음.

국내 구제책의 소진[Exhaustion of Domestic Remedies]: 국제기구가 문제를 파악하기 전, 당사국 내 인권 침해를 구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임. 따라서 청원을 제출하기 전에 국내 법원에서 구제책을 모색하고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함.

"청원 절차[Communications Procedure]": 다만, 국내 구제책이 비효율적이거나 과도하게 지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국내 구제책을 소진하지 않고도 청원할 수 있음.

결정례[Jurisprudence]: 특정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사법 결정 모음.

의무사항[Mandate]: 'Mandate'의 문자 그대로의 정의는 단순히 '명령' 또는 '지시'이나, 유엔의 맥락에서 특정한 역할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문서에서 자주 사용됨. 예를 들어, 아동폭력에 관한 특별 대표의 권한에는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조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음. 또는 정부에 의해 자행된 아동폭력 사건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음.

회원국[Member States]: 유엔 또는 관련 기타 정부간 기구의 회원인 국가.

옴부즈퍼슨[Ombudsperson]: 옴부즈퍼슨은 일반적으로 정부, 의회 또는 유럽 연합과 같은 기관에서 임명한 공무원으로, 시민 개인이 보고한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함으로써 대중의 이익을 대변할 책임이 있음. 일부 관할권에서는 옴부즈퍼슨을 '의회 위원(Parliamentary Commissioner)'이라고 함(예: 서호주). 정부뿐만 아니라 옴부즈퍼슨은 기업, 언론, NGO 또는 일반 대중을 위해 일할 수 있음. 아동의 경우 이러한 역할은 '아동 옴부즈퍼슨' 또는 '아동 위원'으로 지칭될 수 있음.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P]: 조약의 선택의정서는 조약의 특정 목적을 촉진하거나 해당 조항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국이 비준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다자간 협정.

준사법적[Quasi-Judicial]: 제한적인 사법적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 예를 들어 인권위원회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음.

비준[Ratification, Ratify]: 비준, 수락 및 승인은 모두 국제적 수준에서 수행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따라 국가는 조약에 구속됨을 동의하는 것임. 대부분의 다자간 조약은 국가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따라 서명에 구속된다는 동의를 표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절차 규칙[Rules of Procedure]: 조약 기구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관리하기 위해 채택한 공식 규칙. 각 위원회는 관련 조약에 따라 자체 절차 규칙을 채택할 권한이 있음. 일반적으로 절차 규칙은 임원 선출 및 결정 채택 절차, 그 중에서도 특히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상황을 다룸. 절차 규칙은 이행지침과 관련이 있지만 별개임.

당사국[State Party]: 조약의 당사국이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등을 통해 해당 조약에 구속된다는 동의를 표명하고 조약이 발효된 국가를 말함. 이것은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조약에 구속됨을 의미함.

조약[Treaty]: **협약** 참조.

조약 기구[Treaty Body]: 당사국의 조약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설립된 위원회로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s)로 구성됨. 유엔의 핵심 인권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을 모니터링하는 8개의 조약 기구가 설립됨.

